**[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5년 11월 1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의안 : 제2차 유상증자 추진]**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0,00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정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7%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2016.01.13) 전 과거 제3거래일(2016.01.08)부터 제5거래일(2016.01.06)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를 기준주가로 하여 1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5년 12월 07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5년 12월 08일 ~ 12월 14일
3.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0.0%인 14,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12월 07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18818046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라.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2. 신주의 청약예정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6년 01월 13일 ~ 2016년 01월 14일(2일간)

(2)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6년 01월 13일 ~ 2016년 01월 14일(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6년 01월 19일 ~ 2016년 01월 20일(2일간)

1. 주금납입예정일: 2016년 01월 22일
2. 주금납입처: 부산은행 영업부
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4.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NH투자증권㈜
5.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NH투자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NH투자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NH투자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NH투자증권 본, 지점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6년 02월 04일
2.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6년 02월 05일
3. 주권교부처: 한국예탁결제원
4. 기타사항

(1)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nkfg.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8조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개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주확정일(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5년 12월 07일

2. 명의개서정지 기간 : 2015년 12월 08일 – 2015년 12월 14일

2015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대 표 이 사 성 세 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